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7월 5일
- 회부일자 : 2022년 7월 7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삭 제 : 4건

<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장 위임사항 삭제: 4건>

- “군수,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” → “군수” (안 제1조)
- “시장·군수, 도의회 사무처장” → “시장·군수” (안 제5조)
- 의회사무처장 위임사무 삭제(안 제2조제2항, 별표 2)
 - 5급이하 일반공무원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

○ 신 설 : 2건(별표 2)

<업무일원화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설 2건>

- (환경정책과)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(1건)
 - 교육대상자의 교육기한 연기, 선발·통보 및 자료제출 요청
- (환경정책과)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무(1건)
 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·변경승인(단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제외)

○ 그 밖의 개정사항 : 8건

<표기 정정: 1건>

- 표기 정정: 1건(안 제2조제3항)
 - “별표3” → “별표 3”
- 법령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: 1건(안 제6조)
 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준용
-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: 3건(안 별표 1)
 -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(공동체협력과 → 사회적경제과)
 -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(경제기업과 → 사회적경제과)
 - 도축장 외에서 도살 처리한 가축의 수리신고(축수산과 → 동물방역과)
- 근거법령 구체화 및 추가: 3건(안 별표 1)
 - 국가하천·지방하천 관련 사무(자연재난과)
 - (「하천법」 제27조 → 제27조제1항 ~ 제3항
/ 제27조제6항 → 제27조제5항 및 제6항)
 -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사무(사회적경제과)
 - (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3조제1항부터 제4항 → 제3조제1항부터 제5항)

5. 검토의견

이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장의 위임사항을 삭제, 업무일원화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무 신설, 표기 정정, 법령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,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등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 내용은 첫째,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위임사항을 삭제하고,

둘째, 업무일원화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해 환경정책과의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,

셋째, 법령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,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임.

이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장의 위임사항 삭제, 업무일원화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무 신설, 표기 정정, 법령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,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등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